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포장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15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포장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2
※ 참고자료	6
1. 과대포장 관리제도 개요	6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9일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Ⅲ. 검토의견

1. 포장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현행법령에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제조자등이 준수해야 할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배 등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포장폐기물에 제품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포장폐기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u>포장폐기물</u> 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 -----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¹⁾에서는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에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등 준수 의무를 두고 있고, 2024년 4월 30일부터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²⁾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택배)에 대한 포장 방법 기준(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등)을 적용하여 시행(계도기간 2년)하고 있는 상황임.

[포장 횟수, 포장공간 비율]

구 분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비고
제품포장	제품	2차 이내 (의류는 1차 이내)	10~35% 이하	시행중 (’03년~)
	선물세트	2차 이내	25% 이하	
수송(택배)포장		1차 이내	50% 이하*	’24.4.30 시행**

* (가로+세로+높이)가 50cm인 경우는 제외

** (계도기간) ’24.4.30~’26.4.29, 2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비고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택배물량은 36억 3,000만개로 2012년 기준 14억 600만개 대비 158.1% 증가하였으며, 택배 포장폐기물이 약 182만톤 발생³⁾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포장폐기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택배물량 현황]

(단위 : 천만개)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택배물량	140.6	150.9	162.3	181.6	204.7	231.9	254.3	289.0	337.4	362.9

※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이에 개정안은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포장폐기물이 '21년 기준으로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톤)의 약 8.8%인 182만톤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무분별한 발생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감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①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⁴⁾에서 제품포장의 범위에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② 수송

3) 택배상자 1개당 502g(우체국 택배상자 6종 평균무게)을 적용하여 산출함.

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포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⁵⁾하며, ③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의 규제적용 제외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시 업계의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5) 현재 수송포장제도 규제대상 제품군은 시행령에서,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참고자료

1. 과대포장 관리제도 개요

□ (목적)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 도모

□ (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제품포장규칙」

※ ▲「자원재활용법」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종류별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규정

□ (준수사항) 포장 횟수, 포장공간 비율

구 분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비고
제품포장	제품	2차 이내 (의류는 1차 이내)	10~35% 이하	시행중 (’03년~)
	선물세트	2차 이내	25% 이하	
수송(택배)포장		1차 이내	50% 이하*	’24.4.30 시행**

* (가로+세로+높이)가 50cm인 경우는 제외

** (계도기간) ’24.4.30~’26.4.29, 2년

□ (준수대상)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자

○ (제품범위) ①음식료품류, ②화장품류, ③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④전자제품류*, ⑤세제류, ⑥의약외품류, ⑦잡화류(완구·문구·인형·지갑·허리띠), ⑧선물세트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 휴대용 제품에 한함)

○ (포장범위) [종전]제품 포장 + [4.30일 이후]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포장

< 참고 : 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 현황 >

- (제조자)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수입자)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판매자)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예시) ①백화점(온라인몰 운영), TV홈쇼핑(통신판매), ②쿠팡, 컬리 등 제품을 직접 택배로 판매하는 업체, ③인터넷중계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입점한 업체

- (기타)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대상 미해당